

#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3. 31

다. 상 정 일 자 : 2005. 4. 15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이선 의원

나. 제안사유

- 금융기관이 금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금고선정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과 아울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금고선정시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였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 금고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한다.(안 제2조2항)
-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정하였던 것을 “회계구분 없이 한개의 금고를 선정한다”로 개정(안 제2조제3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금고선정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과 아울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불 임 :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금고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한다”를 “금고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한다”에 “단,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2조제2항 선정된 금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연장한다”

제2조 제3항 금고는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를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금고의 선정) ①금고선정은 공개 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②선정된 금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③금고는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p>	<p>제2조(금고의 선정) ① - - - - - - - - - - - - - - - 단,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② - - - - - 3년 - - - - -</p> <p>③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 - - - -</p>